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무팀 심사필

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. . .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행정 능력 향상 도모

2. 주요내용

- 정원 조정 (별표 3)
 - ▶ 사업소 : 박물관 지역현안 관련기능 감소에 따른 정원 1명 감축
 - ▶ 본청 : 고도육성분야 팀 신설, 기능강화에 따른 정원 1명 증원

기관별 정원수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	면
개정 전	620	366	14	76	38	20	106
개정 후	620	367	14	76	37	20	106
증감내역	-	+1	-	-	△1	-	-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4.11.08.~2024.11.13.(특이사항 없음)
- 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 없음.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정원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620	367	14	76	37	20	106
정무직 계	1	1					
군 수	1	1					
별정직 계	2	2					
6급 상당 이하	2	2					
일반직 계	589	356	14	59	34	20	106
4급	2	1		1			
4~5급	3	2				1	
5급	29	17	2	2	1		7
6급 이하 계	555	336	12	56	33	19	99
연구직 계	8	3		2	3		
연 구 관	1				1		
연 구 사	7	3		2	2		
지도직 계	20	5		15			
지 도 관	1			1			
지 도 사	19	5		14			

〈관련 법령〉

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<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총무과	
연 락 처	054-950-6072